

12. 行政規制基本法施行令(案)立法豫告

총무처공고 제1997-63호 1997. 10. 30

주요 골자

- 가.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인가등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영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기관의 감독·처분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 고용의무·명의대여금지등 작위·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적용이 곤란한 사무로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명령에 관한 사항, 주요 군사시설 및 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조세관련 법령에 의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존 규제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제등록절차를 정하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변경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 라. 규제영향분석의 분석항목별 세부평가 요소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은 위원회가 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국민이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컴퓨터 통신·구술·전화등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의견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바. 위원회는 매년 10월말까지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부처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이를 종합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아.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 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직원 및 관련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및 재검토·정비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타 규제와 중복·경합되는 규제등을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3조)

개 정 이 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이 제정·공포('97. 8. 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에 종으로 작성)를 총무처장(참조: 조직국 제도2과장, 주소: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720-2065, 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일정한 행위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나. 영업정지·개선명령·허가의 취소·등록말소·확인조사·단속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처분 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 다. 일정한 사업등과 관련하여 고용의무·신고·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명의대여 금지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라.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공고를 포함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법 적용이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1.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명령에 관한 사항
- 2. 주요 군사시설 및 기밀 보호에 관한 사항
- 3.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 4. 조세관련 법령에 의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

제 4 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변경 또는 폐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의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규제 명칭

-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3. 규제의 처리기관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등의 내용
- 5. 규제의 공포·시행 또는 발령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기타 위원회가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단위 및 등록양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미등록된 규제의 등록 또는 법령정비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 2 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 6 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시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정의

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조치의 필요성

다. 정부개입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기존 법령과 상충여부 등 법률적 제약요소

나. 국민, 기업, 사회단체 등의 반대 등 사회적 제약요소

다.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요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로 대체가능 여부

나. 이용가능한 비규제대안 검토

다. 동일 또는 유사규제와의 중복 여부

4.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행정·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

나. 규제의 사회적 편익 및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분명, 일관, 이해용이 여부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간 검토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 등

규제집행을 위한 소요조직 및 인력·예산에 대한 검토

8. 관련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단축 등 검토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이 내용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작성에 관여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분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

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자체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규제 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의견수렴의 절차)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제출서류의 보완)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비사항과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개선권고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관계 행정기관의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이내에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재심사의 요청절차 및 방법)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이내에 재심사요청대상 및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 12 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국민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주소
2. 정비를 요하는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접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3 조(정비지침의 시달)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매년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정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 기준
3. 중점추진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당해기관의 중점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지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자체정비 실적
5.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제 15 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 2월말까지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정비종합계획에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추진실적과 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장 규제개혁위원회

제 16 조(위원장의 직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 17 조(위원의 자격)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자

제 18 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총무처장관·법제처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2.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③ 간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일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0 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21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기타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2 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위원회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3 조(관계행정기관의 자료 등 제출)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24 조(이해관계인등의 진술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일주일전까지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개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실지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장소,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행정연구원
2. 한국개발연구원
3.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관련 전문연구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7 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9 조(규제개선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선 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련부처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상황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③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3. 기타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 실적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 31 조(정책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의 재검토·정비 등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은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
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법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
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해
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부터 과거 5년간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규제

3. 타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
제

4. 시행·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
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부
터 5년이 되는 해까지는 매년 당해연
도의 연차별 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제14조의 자체정비실적에 갈음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회보